제23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討報告書

【오현숙 의원 대표발의】



2022. 3. 21.

行政委員會 專門委員金玉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討報告書

1. 경 과

의안 제469호로 2022년 3월 10일 오현숙 의원 외 5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2년 3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운영 중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다양한 참여보장을 통한 대표성· 비례성을 강화하고 역량을 제고하여 주민 자치회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의 자율성을 존중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외국인 주민 증가 및 선거권 연령 하향 등 추세에 따른 주민 자치회위원 자격 확대(안 제7조)
- 나. 공개모집 및 공개 추첨을 통한 위원 및 예비후보자의 선정으로 개방성, 대표성, 다양성, 공정성 추구 (안 제8조~제8조의2)

- 다. 간사를 선출직으로 전환하고 간사 자격의 범위를 넓혀 동별로 탄력적 운영(안 제16조)
- 라. 분과위원회 활동에 일반주민이 참여 가능토록 기회 부여 (안 제17조)
- 마. 정기회의, 분과회의 등 주민자치회 운용에 탄력성 부여 (안 제18조)
- 바. 부칙 제2조 유효기간 삭제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 다. 입법예고(2022, 3, 8, ~ 3, 14.) 결과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 확대 운영에 앞서 시범 실시 중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우리구 주민자치회 여건을 반영하여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7조는 외국인 주민 증가 및 선거권 연령 하향 등의 추세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을 확대하고자 하는 조항임.

- ①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요건을 모집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변경.
- ②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 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 등록 대장에 등록된 자에 대해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사항으로 추가됨.
- 안 제8조에서 제8조의2는 공개모집 및 공개 추첨을 통한 위원 및 예비후보자의 선정으로 개방성, 대표성, 다양성, 공정성을 추구한 조항이며 안 제8조제1항이 변경됨에 따라 부칙 제2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기간까지 효력이 있다'는 규정을 삭제함.

내용	현 행	개정안
위원의 선정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 학교 교육과정 이수자 중 정원의 10분의 5를 추첨으로 선정하고 위원선정관리위원회에서 정원의 10분의 5를 선정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 학교 교육과정 이수자 중 위원 선정관리위원회에서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
예비 후보자의 선정	위원선정관리위원회에서에서 후보자를 제외한 6명 이하의 예비후보자 순위를 정할 수 있음. 예비후보자 있는 경우: 순서대로 예비후보자 없는 경우: 선정 후 위촉	위원선정관리위원회에서 6명 이내의 예비후보자를 두며 공개 추첨으로 순위를 정함.

- 안 제16조는 간사의 선임 및 운영 등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간사를 선출직으로 전환하고 간사 자격의 범위를 넓혀 동별로 탄력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함.

현 행	개정안
주민자치회장은 위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선임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에서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제7조제1항 본문 외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간사로 임명할 수 있다. ※ 제7조제1항 본문 외 각 호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 4.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 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 등록 대장에 등재된 자

- 안 제17조에서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구성한 것을 일반주민이 참여가능하도록 하여 직접 주민이 자치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함.

현 행	개정안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분과위원회는 위원과 제7조제1항 본문 외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자로 구성한다. ※ 제7조제1항 본문 외 각 호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
	4.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 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 등록 대장에 등재된 자

- 안 제18조는 정기회의, 분과회의 등 주민자치회 운영에 탄력성· 자율성을 부여하고 촉박한 사업일정 및 과도한 업무량에 대한 부담을 개선하고자 함.

현 행	개정안
1, 정기회의 월 1회 2. 분과위원회의는 월 1회 개최하며,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3. 분과위원장 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동장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1. 정기회의 월 1회, 다만 주민자치회 의결로 격월 개최 할 수 있다. 2. 분과위원회 회의 중 정기회는 월 1회, 다만, 주민자치회 의결로 격월 개최 할 수 있으며 임시회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할 수 있다. 3. 분과위원장 회의는 월 1회 이상, 다만 주민자치회 의결로 격월로 개최할 수 있다.

○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 표준 조례 개정안을 근거로 우리구의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경험과 주민자치 운영여건을 반영하였으며.

주민자치회의 다양한 주민의 참여보장과 운영의 자율성 및 투명성 확보로 자치역량를 강화하고 자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견고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됨.

참 고 자 료

1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주민자치회의 설치)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수 있다.

제28조(주민자치회의 기능) ① 제27조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②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 2.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

제29조(주민자치회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 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 · 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